
- 2015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 획 감 사 실]

2015년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21건	
1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2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3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4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	
5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6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7	등록면허세(면허) 납세확인 소홀	
8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9	건설공사 착공신고서 검토 소홀	
10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11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12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	
13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착오	
14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15	취득세(이륜차량) 과세자료 통보 누락	
16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17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1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20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21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1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3.12.30	2014년 ○○○ 유류단가계약	★★주유소	70,522,000	70,000
2015.02.02	2015년 유류구매 단가계약	★★주유소	42,140,000	4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2015년 ★★★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초과이므로 2014년 계약시 4만 원, 2015년 계약시 7만 원 총 11만 원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고, 미징구한 11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현황(개장신고 관련)

부서명	직 급	성 명	부서임용일	담당사무	권한신청일	권한부여일	부여권한
★★★	☆☆☆급	○○○	2014.07.28.	개장신고	-	-	-

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

연 도	민원명	불필요 서류 징구 현황(건)					비고
		계	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 타	
계		3	3				
2014	개장신고서(○○○)	1	1				
"	개장신고서(★★★)	1	1				
"	개장신고서(☆☆☆)	1	1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호의 사항은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¹⁾」 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²⁾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³⁾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이용관리자등은 신청을 한 사람이 업무분장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권한을 승인하여야 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역을 공동이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 신청 소홀

○○○에서는 개장허가 및 신고 업무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토지(임야)대장 등 열람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공동이용

1)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2) ○○읍장

3) 부읍·면장 및 동 행정민원담당

관리자등에게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장 신고서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개장 신고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방지하고 법정서식 상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한 공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례가 없는 등 접근권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장 신고서 제출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 징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개장⁴⁾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며, 개장 신고 및 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 서류⁵⁾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⁶⁾」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에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결과 위 현황 “나”와 같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축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함)

6)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1109(2014.3.25.)

【처 분 요 구】

- 개장신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앞으로, 인사발령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16,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비고
계					32,000	16,000	
1	○○○		2015.01.1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이내)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		2015.03.0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이내)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등록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아 16,00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다 부과된 주민등록 과태료 16,000원을 환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장애인 재판정 미이행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재진단예정일	재진단통지일	재촉구통지일	비 고
○○○		2009.07.13	2014.12.31	2015.3.10	미이행 취소 안 됨
★★★		2014.04.04	2014.12.31	-	15.2.5이행 지연승인
☆☆☆		2014.07.27	2014.12.31	2015.3.10	미이행 취소 안 됨
△△△		2015.01.14	2014.12.31	2015.3.10	15.3.31이행
▲▲▲		2015.04.24	2015.03.05	-	미이행

2. 내 용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부

터 3개월 전까지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소정기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재진단예정일보다 뒤늦게 통지를 하거나 사전통지 및 재촉구공문에도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취소공문을 발송하거나 취소처분을 하지 않아 장애인 재판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누락된 장애 재진단 기한일은 즉시 입력하고, 장애 재진단 미이행 촉구 및 장애인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애인 재판정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료급여증 미회수 현황(기초1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종별	발급일자	중지 결정일자	중지사유	회수여부
■		기초1종	2013.05.21	2014.07.31	사망	미회수
■		기초1종	2014.06.03	2014.08.02	사망	미회수
■		기초1종	2014.06.20	2014.09.28	사망	미회수
■		기초1종	2014.02.12	2014.11.24	사망	미회수
■		기초1종	2013.06.11	2014.11.30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회수
■		기초1종	2013.07.29	2014.11.30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회수
■		기초1종	2014.12.05	2015.01.31	사망	미회수

2. 내 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급권에 의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의료급여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2014.11.19 개정) 회수한 의료급여증은 내부결재후 폐기토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기초수급권에서 사망 혹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로 인한 의료급여 중지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한 기록이 없어 의료급여증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의료급여 보장중지 7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록관리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정 2,168,00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구 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20	2,168,000	2,038,000	130,000	
법인균등분	소계	13	1,430,000	1,300,000	130,000	
	2013	3	495,000	450,000	45,000	
	2014	10	935,000	850,000	85,000	
재산분	소계	7	738,000	738,000		
	2013	3	296,500	296,500		
	2014	4	441,500	441,500		

2. 내 용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4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7건 738천 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균등분)(10개소) 13건 1,430천 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재산분) 7건 738천 원과 주민세(법인균등분) 13건 1,430천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3,000원

【제 목】 등록면허세(면허) 납세확인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업무처리 내용	연도별	미확인 건수	미징수 세액	비 고
계		4	33,00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3	1	12,000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신고	2013	2	12,000	
	2014	1	9,000	

2. 내 용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를 처리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미징수된 등록면허세(면허) 4건 33천 원을 과세 조치하고, 향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준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교부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118,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6건				2,118		
○○리 우회도로변 주차장 조성공사	'15.03.25.	'15.03.26. ~'15.05.24.	14,617	39	○○○(주)	
★★★리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1공구)	'15.04.03.	'15.04.07. ~'15.06.05.	40,200	1,150	★★★(주)	
★★★리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2공구)	'15.03.27.	'15.03.31. ~'15.05.29.	17,820	160	(주)○○○	
★★★리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3공구)	'15.04.03.	'15.04.07. ~'15.06.05.	33,195	197	(합)○○○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	'15.03.27.	'15.03.31. ~'15.05.29.	19,780	118	(주)★★★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	'15.03.27.	'15.03.31. ~'15.05.29.	19,560	454	(주)☆☆☆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 및 「건설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5.03.25. ★★★(주) ○○○와 계약체결 시공 중인 ★★3리 우회도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운반비 적용 착오(견적가와 산출단가 비교후 낮은 단가 적용)와 골재별 운반 평균 주행속도 적용 착오(골재별 적용 속도 상이) 및 석축혈기(찰쌓기)에 인력품 착오 적용 등으로 1건 39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 하였고,

○○○에서는 2015.04.03. ☆☆☆(주) ○○○과 계약체결 시공중인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1공구)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운반비 적용 착오(운반거리 과다 적용)와 무근콘크리트 깨기(소형브레이카) 후 들어내기(백호우 0.7㎡) 착오 적용(소형브레이카 사용으로 별도 들어내기 불필요 및 장비 진입 불가), 아스콘 포장복구의 택코팅 수량 착오 적용(㎡를 a로 적용) 등으로 5건 2,079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6건 2,118천 원에(제경비 포함)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처리 하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공사 착공신고서 검토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도급자	지적내용	비고
2건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2공구)	'15.03.27.	'15.03.31. ~'15.05.29.	17,820	(주) ○○○	건강,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	'15.03.27.	'15.03.31. ~'15.05.29.	8,350	★★★	의 금액 조정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제 13장 제5절 제5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첨부서류 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감독관은 「삼척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서(첨부서류 포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제1장 제8절제1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에 반영된(산출내역서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급배수 노후관로 교체공사(2공구)외 1건 계약상대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예정가격에 반영된(산출내역서 포함) 금액과 상이하게 작성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착공신고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계약상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예정가격에 반영된(산출내역서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한 변경 착공신고서(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완하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자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34,500				
1	2015.03.04.	5,200	2015.03.17.	○○○	8	
2	2015.03.05.	5,900	2015.03.17.	"	7	
3	2015.03.06.	400	2015.03.17.	"	6	
4	2015.03.09.	23,000	2015.03.17.	"	8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면에 있다는 이유로 2015.03.04.부터 2014.03.09.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4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5일 안에 납입하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인지 미소화액
2014.01.02	2014년 유류 단가계약	○○○	19,049,800	20,000
2015.02.02	2015년 유류 단가계약	○○○	14,815,100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

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2015년 유류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2014년 계약시 2만 원, 2015년 계약시 2만 원 총 4만 원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기 바라며, 미징구한 4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장애인 재판정 미이행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재진단예정일	재진단통지일	재촉구통지일	비고
		2015.02.28	2015.01.30	-	미이행
		2015.02.28	2015.01.30	-	15.3.6진단 현재 심사중

2. 내 용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상태를 확인을 위해 최소 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소정기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 장애진단서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 기한 내에

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 통지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장애연금대상자임에도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재촉공문이 통지하지 않았고 장애연금은 계속 지급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누락된 장애 재진단 기한일은 즉시 입력하고, 장애 재진단 미이행 촉구 및 장애인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애인 재판정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42,090원

【제 목】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착오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세 목	연도별	건수	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비고
재산세 (건축물)	2013	5	442,090	312,410	67,220	62,460	

2. 내 용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마을회(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2013년도 분 재산세 5건 442,090원을 착오로 감면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착오로 감면 처리한 재산세(건축물분) 5건 442,090원을 조속한 시일 내 과세 조치하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4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정 205,75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구 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3	205,750	195,750	10,000	
법인균등분	소계	2	110,000	100,000	10,000	
	2013	1	55,000	50,000	5,000	
	2014	1	55,000	50,000	5,000	
재산분	2014	1	95,750	95,750		

2. 내 용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

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사업장 연면적을 과소 신고한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95,750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균등분)(1개소) 2건 110,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법인균등분) 2건 110,000원과 주민세(재산분) 1건 95,750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과세 조치하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33,400원

【제 목】 취득세(이륜차량) 과세자료 통보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세 목	연도별	건 수	세 액	비 고
계		4	233,400	
취득세(이륜차량)	2013	1	42,400	
	2014	3	191,000	

2. 내 용

「지방세법」 제20조에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2 내지 제134조의5 규정에 의하면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부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자료의 발생 반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세무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취득세를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취득세 4건 233,400원을 부과 징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051,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2건				3,051		
☆☆☆ 유원지 정비공사(1구간)	2015.4.14	2015.4.15 ~2015.6.13	19,710	1,644	(합)○○○	
★★★ 배수로 정비공사	2015.5.7	2015.5.7 ~2015.6.20	16,210	1,407	(합)★★★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 및 「건설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설계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 측량 분석하여 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

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 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5.4.14일 (합)★★★ ○○○과 계약체결 시공 중인 ☆☆☆ 유원지 정비공사(1구간)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석(전석)쌓기 뒤채움 잡석을 현장내 잔토처리 물량과 순성토로 활용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석산에서 구입 운반으로 설계하여 1,644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설계하였고,

2015.5.7일 (합)★★★ ○○○과 계약 체결 시공 중인 ●●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복개위 수로공사(500*2000)시 암거 슬래브를 과다하게(B:1.4m) 절단 시공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차량 진입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시공비 1,407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2건 3,051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처리 하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관련 업무연찬 등을 통해 과다 및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18건	774,900				
2013	6건	281,900	별첨	○○○	별첨	
2014	7건	323,100	"	"	"	
2015	5건	169,900	"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08.06.부터 2014.04.29.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18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1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대금지급 일자	사업명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실소화액	부적정사유
계	6건		39,402,250	1,110,000	
2013.05.24	○○○ 석축보강공사	(주)○○○	14,300,000	335,000	20,000원 미소화
2013.06.13	○○○ 하수도 정비공사	(자)○○○	7,730,000	195,000	5,000원 추가소화
2013.08.01	○○○경로당 보일러 및 창고지붕보수공사	○○○	3,600,000	0	90,000원 미소화
2013.08.16	○○○ 석축 및 포장공사	★★★	4,480,000	120,000	10,000원 추가소화
2014.08.11	○○○집 뒤 석축공사	○○○(주)	8,291,250	210,000	5,000원 추가소화
2015.02.10	주민헬스장 운동기구 수리비 지출	☆☆☆	1,001,000	250,000	225,000원 추가소화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매입대상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역개발채권 소화의 매입 시기는 각종 계약체결(공사도급,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청구시 매입하여야 하며, 채권 소화기준은 공사, 용역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등의 경우 1.5/100로 5,000원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하며, 채권매입 의무자로부터 원본의 채권매입필증을 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석축보강공사” 등 총 2건의 계약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채권 11만 원을 미소화 하였으며, “★★★ 하수도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계약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245천 원을 추가로 소화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10천 원을 소화하고,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132,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연도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착 오 부과액	정 상 부과액	비 고
계	10명				264,000	132,000	
2014년	○○○ 외 6				200,000	100,000	100,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015년	★★★ 외 2				64,000	32,000	32,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등록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아 10건 132천 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다 부과된 주민등록 과태료 132,000원을 환급하여 주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지연 현황

민원명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	2014. 09. 25.	2014.10.20.	2014.10.22.	2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길 ○○(★★동) ○○○이 2014. 9. 25. 신청한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민원을 처리기한(2014. 10. 20)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4. 10. 22. 민원처리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민원사무처리는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료급여증 미회수 현황

세대주	생년월일	의료급여 종별	가구 원수	중지결정일자	중지사유	회수여부
		2종	4	2014.08.11	소득(급여,사업)증가	미회수
		1종	2	2014.12.30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미회수
		2종	5	2014.12.30	소득(급여,사업)증가	미회수
		1종	1	2014.12.30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미회수
		1종	1	2015.01.06	사망	미회수
		2종	1	2015.02.04	중지신청(본인요구)	미회수
		1종	1	2015.03.16	사망	미회수

2. 내 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급권에 의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의료급여증을 반

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2014.11.19개정), 회수한 의료급여증은 내부결재후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다.

○○○에서는 기초수급권에서 사망 혹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로 인한 의료급여 중지자에 대해서 대부분 반납등록과 내부결재를 통한 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의료급여증 회수기록이 없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의료급여 보장중지 7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록관리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